

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

● 사업목적

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**직장복귀지원금** 등을 지원함으로써 **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**

● 지원대상

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**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·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**

● 지원내용

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

※ 산재장해 제1급~제3급 월 80만원, 제4급~제9급 월 60만원, 제10급~제12급 월 45만원 지급

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**월 45만원**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

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**월 15만원** 범위 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

● 사업추진체계

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
(산재장해인)



지원금 등 청구 (사업주)



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,
사후관리 (근로복지공단)

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: 1588-0075
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: www.kcornwel.or.kr